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직원 후생복지에 관하여 지방의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를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구미시의회 의장과 통합 운영(안 제24조)
-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대상 변경(안 제4조제2항제1호)
- 조사 시 조화 및 물품 지원 대상 확대(안 제15조제7호)
- 장기근속(명예) 퇴직예정자 국·내외 연수 대상 변경(안 제15조제8호)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7조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붙임)
-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
-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직원 후생복지에 관하여 지방의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후생복지제도 제한 대상, 조사 시 지원 대상, 퇴직 예정자에 대한 국·내외 연수 대상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임.

○ 검토 결과,

-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임용권이 부여되었으나 직원 후생복지에 관하여 시와 의회 별도 운영보다는 운영의 편의성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 실제 운영 상황에 맞도록 후생복지제도 배제·제한 대상을 휴직 중인 공무원으로 변경, 조사 시 조화물품 지원 대상을 조부모·외조부모로 확대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퇴직예정자 가족에 대한 국·내외 연수 지원 근거를 삭제하여 일률적이고 과도한 지원을 제한하도록 하는 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